

화학사고, '즉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화학물질관리법 상 즉시 신고 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시사점

2026.08.10

지난 2026. 7. 22. 발간한 [「화학사고 예방, 기업의 관리체계가 정답」](#) 뉴스레터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화학사고 인명피해 저감방안」을 중심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리체계와 화학물질관리법상 주요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금번 뉴스레터는 그 **후속편**으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 신고 의무**를 다룹니다. 최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즉시 신고 의무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즉시 신고 의무의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 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 보관, 운송, 사용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즉시 신고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2항 제23호,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화학물질관리법은 별도로 ‘즉시’의 의미와 범위를 구체화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은 **화학물질별 유출·누출량과 화학사고 양태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이하 ‘즉시신고규정’)은 별표 1에서 화학사고의 상황별로 즉시 신고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출·누출량이 기준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5분 이내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별표 1]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의 상황	즉시 신고 기준
가.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어 인명 피해(병원입원 또는 병원진단서 등으로 증명)가 발생한 경우	15분 이내 즉시 신고

나. 화학물질이 제2호* 이상으로 유출·누출된 경우	15분 이내 즉시 신고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고가 가능한 다른 화학물질 취급 종사자가 있는 경우 제외) 1)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2)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인명구조를 하는 경우 3) 화학물질 유출·누출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밸브 개폐작업, 누출부위 봉쇄작업 등)를 하는 경우	해당 사유 해소 시 빠른 시간 내에 신고
라. 화학물질이 제2호* 미만으로 유출·누출된 경우(화재·폭발사고를 포함한다)	빠른 시간 내에 신고
마.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화재·폭발사고를 포함한다)	관련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빠른 시간 내에 신고

*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에서는 화학사고의 상황별 신고 기준이 되는 유출·누출량을 화학물질별로 규정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법원이 이러한 즉시 신고 기준을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판례로 보는 ‘즉시 신고’의 의미

가. ‘15분’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즉시신고규정은 **형식상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즉 행정규칙**입니다. 법령의 위임을 받아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 즉 대외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즉시신고규정의 15분 기준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하급심 판결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은 즉시신고규정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어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의 ‘즉시’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 12. 1. 선고 2021구합7895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11991 판결).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즉시신고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그 근거가 있을 뿐 법률상의 위임 근거는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는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104602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즉시신고규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즉시신고규정에서 정한 15분은 ‘즉시’의 의미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화학사고 발생 후 15분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하여 사고대응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나. 15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사고 발생시점이 아닌 인지시점

‘**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5분이 초과하였으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사고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즉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인 것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i) 신고라는 작위의무의 부과는 그 개념의 본질상 수범자가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ii) 수범자가 해당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즉시 신고 의무의 기산점을 사고 발생시점이 아니라 인지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 12. 1. 선고 2021구합 7895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11991 판결).

다만, 위 판결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화학사고의 발생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갖추어져 있는 등 사전적·상황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략) 화학사고의 발생 인지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시간 내에 그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화학사고 발생을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 후 15분 이내이더라도 발생 후 15분이 경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누구의 인지지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영업자의 인지지점 기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업체의 작업자와 도급인의 직원**이 서로 다른 시점에 사고를 인지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 내에서도 현장부와 중앙의 안전관리부서 등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의 인지를 기준으로 15분을 기산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업체의 작업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즉시 신고 의무의 부담 주체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이고, 이는 곧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를 의미한다고 보아 수급업체 직원들이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사고 발생시 상황 전파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방재실에서 사고 발생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안전팀에서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인지한 시각을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 12. 1. 선고 2021구합78954 판결).

한편, 창원지방법원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인 회사의 소속직원에게 재해가 발생하자 해당 직원이 이를 현업부서에 알리고 현업부서가 환경경영팀에 전달하여 환경경영팀이 유관기관에 신고한 사안에서, 회사의 비상대응 매뉴얼상 비상상황 발생시 사고발생 부서가 환경경영팀에 사고를 보고하면 환경경영팀이 대외 신고를 담당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경경영팀이 인지한 시점**으로 기준으로 즉시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11991 판결).

위 판례들을 종합하면 **즉시 신고 의무의 부담 주체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고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사고를 접한 개별 직원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매뉴얼에 따라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여 **대외신고를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조직이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외 신고의 담당 주체와 절차를 매뉴얼에 명확히 정하고**, 현장 또는 수급업체가 인지한 사고정보가 해당 담당 조직에 **지체 없이 전달되도록 사고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시사점

즉시신고규정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준량 이상으로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분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15분 기준**을 토대로 **기업이 사고를 언제 인지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사고를 신속하게 인지·전파**

시스템과 비상대응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였는지, 사고 인지 후 신고까지 불필요한 지연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 신고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화학사고 발생 시 보고·신고 절차와 담당자를 명확히 정하고, 사고를 신속하게 인지·전파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대응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고 발생시 해당 대응 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기후환경팀은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자문을 비롯하여 화학사고 대응체계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구축, 화학사고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행정조사·행정처분 대응 등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대응체계 점검이나 내부 신고절차 정비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구성원

이용우

대표변호사

02-316-4007

ywlee@shinkim.com

백규석

고문

02-316-4207

gsbaek@shinkim.com

이병화

고문

02-316-7290

bhwlee@shinkim.com

김민관

변호사

02-316-1735

mkwkim@shinkim.com

박건우

변호사

02-316-1787

gwpark@shinkim.com

김기용

수석전문위원

02-316-4496

gykim@shinkim.com